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4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진선미·신영대·윤종군

임오경 · 한병도 · 안태준

임호선 · 서영교 · 정태호

용혜인 • 문정복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 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1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조 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 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 소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금지행위 등)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	
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	
터 <u>제31호</u> 까지에 규정된 행위	<u>শা32ই</u>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	
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u>.</u>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u><신 설></u>	3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
	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
	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
	품구매가 가능한 업소 시설